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_WOR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| 현 행 | 개 정 | 비고 |
|--|---|---|
| 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 - 상환청구권 없음)</p> <p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p> <p>(기재생략)</p> <p>추가약정서</p> <p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</p> <p>제 1 조 (서류의 제출) ~ 제 2 조 (입금계좌)</p> <p>(기재생략)</p> <p>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</p> <p>①~③ (기재생략)</p> <p>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 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⑥ (기재생략)</p> <p>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 ~ 제11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p> <p>(기재생략)</p> | 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 - 상환청구권 없음)</p> <p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추가약정서</p> <p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</p> <p>제 1 조 (서류의 제출) ~ 제 2 조 (입금계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④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 ~ 제11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| <p>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 체상 및 용어 수정 체상</p> |

| | | |
|--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(기재생략)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| |
|--|--|--|

2. 개정시행일: 2019년 7월 4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